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15

발의연월일: 2025. 1. 17.

발 의 자: 강선우 · 서미화 · 김윤덕

소병훈 · 정태호 · 박주민

고민정 • 전현희 • 남인순

박해철 · 장경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"코로나19") 위기상황 당시 가장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수단인 백신 접종이 단기간에 전 국민적으로 권고 및 실시되었으며, 이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위기상황의 극복 및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및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음.

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국민들이 없었다면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었을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상·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「감염병예방법」과 달리 백신접종과 질병 등의 사이에 인과 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간적 개연성,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 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범 위를 확장하고,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하여 상존하는 감염병 대유행의 위험 상황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폭넓은 국가지 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고,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의료비, 사망위로금, 사망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(안 제5조).
- 나.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,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(안 제6조).
- 다.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심의·의결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 록 함(안 제7조).
- 라. 피해보상위원회의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피해보상 청구인, 의료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제출·청취, 「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한 피해관련 사실 조사 등을 규정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.
- 마.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,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

- 을 통보하여야 함(안 제12조 및 제13조).
- 바.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건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 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를 둠(안 제14조 및 제15조).
- 사. 이 법 시행 전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부칙 제3조).

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"코로나 19"라 한다)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코로나19 예방접종"이란 코로나19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방접종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의 책무)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,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- 제5조(국가의 피해보상 등) ①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, 장애 또는 사망(이하 "질병등"이라 한다)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해보상의 내용 및 대상

- 등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예에 따른다.
- 1.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: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
- 2. 장애인이 된 사람: 일시보상금
- 3. 사망한 사람: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
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나 제6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, 사망위로금, 사망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•절차, 제2항에 따른 의료비 등의 지원 신청 방법·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인과관계의 추정)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코로나 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인과관계가 없다고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 재할 것
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또는 연구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과 질병등의 발생 간의 상관관계가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추론 가능할 것
 - 3. 질병등의 발생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

- 제7조(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) ①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 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(이하 "보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.
 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 및 의약품 전문가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
 - 2. 법학, 행정학, 사회학, 의학, 병리학, 약학, 미생물학, 면역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 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 였던 사람
 - 3.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 -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이 추천하여 관련 분 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④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⑤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- 제8조(위원의 결격 사유)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 -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 면직되거나 해촉된다.
- 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 는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, 감정, 법률자문을 한 경우
 - 4.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 - 5.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원으로 피해조사 를 한 경우
 - 6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- ②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
 -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

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의견제출) ①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-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에 담당 의료인, 그 밖에 해당 전문가(이하 "전문가 등"이라 한다)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, 위원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제11조(피해조사) 보상위원회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.
- 제12조(피해보상의 결정)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 산하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 단·검사·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3조(피해보상 등의 통지 의무)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

- 그 사실과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이유(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)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1.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
- 2.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·검사·자문 등으로 인해 당초 통지된 결정기간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결정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(이하 "이의신청인"이라 한다)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이경우 이의신청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피해보상 청구"는 "이의신청"으로, "청구인"은 "이의신청인"으로, "보상위원회"는 "재심위원회"로 본다.
 -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·절차,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·

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15조(재심위원회) ①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건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(이하 "재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단, 보상위원회 위원을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재심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.
 - ②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7조,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7조 및 제9조 중 "보상위원회"는 "재심위원회" 로, 제7조제3항 각 호 중 "5년 이상"은 "7년 이상"으로 본다.
- 제16조(위임 및 위탁)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 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.
- 제3조(이의신청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전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는 이

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조(보상결정 및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전에 「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전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청구를 한 경우는 이 법에 따라 청구한 것으로 본다.